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도시 정의·지정·지원 등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도시 정의·지정·지원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2. 20.
3. 회 부 일: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스포츠도시 정의·지정·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도시를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도시를 지정·지원·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스포츠도시 육성 등을 위해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제5조제2항제4호의2·제6조의2 신설, 안 제10조의2~제10조의5 신설, 안 제21조제1호~제3호 신설, 안 제2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스포츠도시”란 <u>사회환경·자연환경 및 체육 관련 인적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u>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0.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신설>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스포츠도시 육성 및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연장 심사

<신 설>

4. 그 밖에 스포츠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스포츠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스포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스포츠 시설, 스포츠 참여기반, 스포츠 관련 행사 개최 능력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스포츠 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스포츠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스포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신 설>

<신 설>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스포츠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스포츠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도시의 육성·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

제2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 제10조의4에 따라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시·도지사-----.
---	--

다. 검토의견

- 2022년 정부 국정과제¹⁾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제시되는 등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도시 정의,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스포츠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 스포츠도시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도시 지정 사업의 안정성 확보, 스포츠도시 지정 절차의 공정성 제고, 스포츠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별 스포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은 여러 도시 지정제도 근거 법률 중 문화도시 지정제도³⁾를 규율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가장 유사한 조문 구조를 띠고 있음.

1) 「110대 국정과제」, 2022. 5.

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 과제목표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u>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u> ,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2) ‘스포츠도시 지정’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세부사업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에서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 사항은 [참고자료1] 스포츠도시 지원 관련 유사 사례 참조

3) [참고자료3] 문화도시 지정제도 운영 현황

[도시 지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근거법	지정 형태	주요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u>문화도시심의위원회</u> 운영 - 문화도시 지정, 취소, 변경 등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조성계획 작성·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자치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시 1년간 예비사업 실시 *1차례 예비사업 연장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비사업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지정도시에 대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u>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국토부장관 소속 <u>스마트도시위원회</u>, <u>국가시범도시지원단</u> 운영 - 국가시범도시 지정, 운영, 개발, 해제, 변경 등 ○지정 절차 - 1)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 -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 국토부장관: 위원회를 거쳐 지정 ○지정도시에 대한 보조 및 융자 등 <u>재정적 지원 가능</u>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도시	○환경부장관 소속 <u>환경교육위원회</u> 운영 -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등 작성·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자치구) → 환경부장관: 위원회를 거쳐 지정(<u>지정기간: 3년</u>) ○지정도시에 대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u>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국무총리에게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국무총리가 지정(<u>지정기간: 5년</u>)
양성평등 기본법	여성친화도시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여가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여가부장관이 지정(<u>지정기간: 5년</u>) → 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신청 가능
평생교육법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절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평생학습도시/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u>재지정 가능</u>

○ 스포츠도시 육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처럼 지정단위, 신청·지정절차, 지정권자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안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와 관련하여, 내용의 통일성 및 법문 구조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로 규율하는 것보다 안 제10조의3의 항으로 신설하고, 예산 지원 주체를 국가(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⁴⁾ 등을 참고하여, 안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유지하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제10조의3(스포츠도시의 지정)·제10조의4(스포츠도시의 지정

4)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내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4조를 고려하여 안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는 삭제하되, 유사 위원회는 상호 연계·통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취소) 및 안 제21조(청문) 등 지정·해제 관련 세부 규정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⁵⁾⁶⁾

5)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안 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21조 삭제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4. “스포츠도시”란 사회환경·자연환경 및 체육 관련 인적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4. ----- 지 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②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② (현행과 같음)
4의2. 스포츠도시 육성 및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의2.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도시의 육성·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스포츠도시 조성 권한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6조의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를 조성하고,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스포츠도시 지원 관련 유사 사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 도시마케팅을 활용한 중소도시의 도시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와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스포츠도시 모델을 발굴하여 스포노믹스 육성
- 시행주체/지원방법: 강릉시, 서귀포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기간: 2016.12월 ~ 2019.10월(3년)
- 지원규모: 총 119억원(지방비 포함, 2개소) *기금:지방비 50:50 매칭

구 분	강릉시 (단위: 억)			서귀포시 (단위: 억)		
	기금	지방비	합계	기금	지방비	합계
1년차(2016)	10	10	20	10	10	20
2년차(2017)	9.75	9.75	19.5	9.75	9.75	19.5
3년차(2018)	10	10	20	10	10	20
합 계	29.75	29.75	59.5	29.75	29.75	59.5

□ 지방자치단체별 주요사업 실적

구 분	강릉시	서귀포시
1차년 (2016)	• 빙상스포츠메카 조성계획 수립 및 컨설팅 • 국내외 빙상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 빙상인구 10만 율곡프로젝트 • 동계스포츠테인먼트 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운영	• 축구육성센터 조성사업 • 유소년 축구클럽 활성화 사업 • 제주 국제유스 축구대회 • 한중일 축구대회 • 실버/여성 축구캠프 운영
2차년 (2017)	• 국내외 빙상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 빙상인구 10만 율곡프로젝트 • 동계스포츠테인먼트 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운영	• 축구육성센터 조성사업 •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신규) • 제주 국제유스 축구대회 개최 • 한중일 축구대회 • 청소년 축구캠프
3차년 (2018)	• 국내외 빙상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 빙상인구 10만 율곡프로젝트 • 엘리트 빙상스포츠팀 창단 및 경기력 제고 • 동계스포츠테인먼트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 통합마케팅 강화를 통한 아이스포테인먼트 수행	• 축구기반시설 보강사업 •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개최 • 한중일 축구대회 • 축구캠프 찾아가는 축구교실

2.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24년 사업명 변경) *2017년~
- 지원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규모: 개소당 기금 5억원 지원(기금:지방비 5:5 매칭)
 - (23년) 4,035백만원, (24년) 4,035백만원, (25년) 1,535백만원
- 지원내용: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대회) 등 프로그램 개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연차평가 후 최대 3개년 지원

□ 최근 3개년 지원현황(2023~2025)

사업명	연도	지자체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내용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2023	부여군	500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
		수영구	500	광안리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
		포항시	500	포항바다 & 포항운하 낭만의 길
		영덕군	500	영덕특화 풋볼트립
		울주군	500	울주 트레일 페스타
		단양군	500	수상스포츠의 메카"단양 구경 가자"
		익산시	500	승마관광 메카도시
		부안군	500	마린 어드벤처(Marine Adventure) 부안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2024	단양군	500	수상스포츠의 메카 "단양 구경가자"
		울주군	500	울주 트레일 페스타
		익산시	500	승마관광 메카도시 익산
		부안군	500	새만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신안군	500	플로피아 1004섬 신안 스포츠관광 축제
		영암군	500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철원군	500	철원 DMZ 로드 스포츠특화 사업
		태백시	500	Hi-High 레전드와 함께하는 산악스포츠
	2025	영암군	500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철원군	500	철원 DMZ 로드 스포츠특화 사업
		태백시	500	Hi-High 레전드와 함께하는 산악스포츠

[참고자료2] 주요 스포츠도시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례1) 대구광역시

- (기본 인프라)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가능 공인 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시설을 보유
 - 대구스타디움, 대구육상진흥센터, 대구국제사격장, 대구 월드컵 경기장 등 다목적 활용 시설을 비롯하여 주요 시설 20개소 이상 보유
- (주요 인프라) 기초종목(육상) 관련 인프라 대구육상진흥센터 보유
 - (시설) 200m 트랙 6레인, 60m 허들 트랙 등 육상종목 및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포환던지기 경기장 등 필드 종목 경기장 구축
 -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상비군,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소속 선수 등 훈련장소 활용, 국제규모 육상대회 유치 및 운영
- (이벤트 유치) 국제 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비롯하여 생활체육 분야에서 활발한 이벤트 유치 및 개최를 진행
 -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통해 국제 규모 이벤트 개최 경험 보유
 - 생활체육 중심 전국대회 및 전문체육 대회 개최도 활발

□ (사례2) 부산광역시

- (스포츠단체) 종목별 프로스포츠단, 지역 대표 유소년팀 등 스포츠단 다수 보유
 - 국내 원년 프로야구단이며 열성적인 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와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프로농구단 부산KCC 이지스, 부산BNK썸 보유
 - 부산고등학교 등 지역 명문 대표 청소년 야구단 등 전문체육분야에서도 스포츠단 운영
- (지자체 역량) 시민 스포츠 참여공간 확보와 해당 지역을 프로스포츠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노력 전개
 - 프로농구단(KCC 이지스) 연고지 부산 유치('23년) 및 기장야구테마파크(정규 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등) 조성 등 건립사업 추진

-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 피력
- (기본 인프라) 야구 종목 특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보유
 - 국내 최초 야구 박물관 건립(부산 기장군) 및 KBO 야구센터 실시협약('23년)을 통한 유소년 트레이닝 캠프 등 KBO 야구센터 프로그램 유치 및 운영

[참고자료3] 문화도시 지정제도 운영 현황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현황

- (추진배경)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성장 사다리이자, 지역 고유문화를 토대로 도시가 성장하는 모멘텀 필요
- (사업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조성
- (지원규모) △('24년) 13개 지역 광역형 앵커사업 비용 지원(13곳×4억원), △('25~'27년) 13개 지역 총 2,600억 원(13곳 × 200억원) 지원
 - * 국비5 : 지방비5 매칭 ('24년 국비 26억원, '25~'27 국비 1,300억원)
- (지정현황) 총 13곳

권역	지역	대한민국 문화도시 비전
충청권	충북 충주시	국악콘텐츠 허브시티 충주
	세종특별자치시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충남 홍성군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
강원권	강원 속초시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맛', 음식문화도시 속초
경상권	경남 진주시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
	경남 통영시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
	경북 안동시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안동
광역 시권	부산 수영구	골목에서 바다로 해변 문화컨벤션 도시 수영
	대구 수성구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
경기권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
전라권	전남 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 진도
	전북 전주시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
	전남 순천시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